

IV 정 산 명 세	㉑총급여(㉒다만 외국인단일 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21,600,000	㉔종합소득과세표준	7,203,010					
	㉓근로소득공제		8,490,000	㉕산출세액	432,180					
	㉔근로소득금액		13,110,000	세 액 감 면	㉖「소득세법」					
	기본공제	㉕본인	1,500,000		㉗「조세특례제한법」(㉘제외)					
		㉖배우자			㉙「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㉗부양가족(0명)			㉚조세조약					
	추가공제	㉘경로우대(0명)			㉛세액감면계					
		㉙장애인(0명)			㉜근로소득	237,699				
		㉚부녀자		㉝자녀 공제대상자녀(0명) 출산·입양자(0명)						
	㉛한부모가족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㉜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623,700 공제금액 623,700	연 금 계 좌	㉞「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㉝공적연금보험료공제	㉞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㉟「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㉟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㊱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㊱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㉞보험료	㊱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			대상금액 358,010 공제금액 358,010	㉞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㊱고용보험료			대상금액 125,280 공제금액 125,280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㉟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밖의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㊱주택 자금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㊱기부금(이월분)										
㊱계		483,290								
㉟차감소득금액		10,503,010								
그 밖 의 소 득 공 제	㊱개인연금저축			세 액 공 제	㊱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㊱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㊱청약저축 ㊱주택청약종합저축 ㊱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㊱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투자조합출자등				㊱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신용카드 등 사용액		3,300,000			㊱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㊱계		120,000			
	㊱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㊱표준세액공제					
	㊱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㉞납세조합공제					
	㊱그밖의 소득공제계		3,300,000		㉟주택차입금					
㊱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㉟외국납부							
			㉟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㉟세액공제계	357,699						
			㉟결정세액(㉟- ㉟- ㉟)	74,481						
			㉟실효세율(%) (㉟/ ㉟×100)	0.3%						

㉞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 표시(장애인 해당시 해당코드를 기재) 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유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1	0	0	0	국세청			1,205,100		228,200					
		0	0	0	0	기타	358,010	125,280								
0	이창호	○				국세청			1,205,100		228,200					
1	910216-1205412					기타	358,010	125,280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성명	자료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역사용분 (총급여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합계	국세청	3월		959,496	81,856			
		4~7월		5,269,590	517,323			
		그외	1,216,924	7,960,508	238,678			
	기타	3월						
		4~7월						
		그외						
이창호	국세청	3월		959,496	81,856			
		4~7월		5,269,590	517,323			
		그외	1,216,924	7,960,508	238,678			
	기타	3월						
		4~7월						
		그외						
	국세청	3월						
		4~7월						
		그외						
	기타	3월						
		4~7월						
		그외						
	국세청	3월						
		4~7월						
		그외						
	기타	3월						
		4~7월						
		그외						